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송정빈 의원입니다.

□ 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번안을 제안
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17일 제298회 정례회
우리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, 시민부담 경감차원에서 수도요금
인상폭을 낮추고 시행일을 오는 7월 1일로 늦추는 것으로
수정·의결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 코로나19는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소
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바, 소상공인의
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.

이에 수도요금 인상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

드리고자 한시적인 기간 동안이라도 소상공인에 대한 수도요금을 50%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합니다.

□ 동 번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수도요금 인상폭을 낮추기 위해 수도요금표의 업종별 사용요금 단가를 일부 조정하고 조례 시행일 및 수도요금표 변경에 따른 적용례를 수정하며,

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를 한시적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께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